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5월 2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2024 - 52

나. 발 의 자: 박학용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4. 5. 2.)

2.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3.08.16. 개정, 2024.2.17. 시행)이 의회 의장과 구청장에게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도록 개정됨으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3조제3항의 개정 사항인 의장과 구청장의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의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3항)

나. 법 제12조의 개정 사항인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여부
결정 기한을 규정함(안 제12조)

다. 조례 제10조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6호 서식)

라. 기타 조항의 성격에 맞는 조 제목 수정 및 조항 정리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의장과 구청장의 홍보 의무, 청구의 수리·각하 기간 규정 등 법률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종전 조례에서 누락되었던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서를 신설·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법 제3조제3항의 신설에 따라 의장과 구청장의 홍보 의무 규정 신설
- 법 제12조의 청구의 수리·각하 기간을 법에서 정한 3개월로 규정함
-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서 신설

다. 비용추계

- 예산 수반 사항 없음

- 추후 구체적인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12조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논리적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3개월이라는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한 기간으로서 우리 구 조례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기간에 대한 규정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 아울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개정 현황은 개정 완료 4개구 완료, 21개구 미완료인 상태임.
 - 개정 완료된 4개 자치구 모두 각하·수리 기간은 법의 규정과 동일한 3개월로 하고 있음.

구 분	완 료(4개)	미 완 료(21개)
자치구명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중구	강서구,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 주민조례청구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음.
-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